

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제2항중 “60일”을 “90일”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특별휴가) ① (생략)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	제23조(특별휴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90일----- -----